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i)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법인세의 환급(후속 사업연도분 법인세에서 공제)에 연간한도(과다납부액의 20%)를 신설한 2017. 1. 1. 시행 개정규정의 시간적 적용범위: 경정청구 시기가 아니라 경정결정 시기가 기준 (ii)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직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1. 개요[1]

원고는 선박·해양플랜트 등을 설계·제작·판매하는 조선업체입니다. 외부감사인은 2015 사업연도분 회계감사 중 원고가 2013, 2014년분 재무제표를 분식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4. 14. 재무제표를 정정공시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3. 8. 원고가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무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정정공시보다는 뒤이지만 제재조치보다는 전인 2016. 6. 7. 원고는 2013년분 및 2014년분으로 납부한 법인세 등의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일부 직권 감액경정, 조세심판원의 심판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처분청은 원고가 감액경정을 구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부인하고 환급받을 법인세 등 국세환급금이 2013년분과 2014년분을 합한 금액으로 약 2,370억 원이라고 감액경정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이 판결에는 여러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식 과다납부세액 약 2,370억 원을 언제 어떤 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원고는 이 돈이 분식 과다납부세액에 관한 특례규정[2]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므로 국세기본법[3]으로 돌아가서 전액을 즉시 부당이득(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청은 같은 특례규정에 따를 때 즉시환급 대상이 아니고 감액경정 후의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며 그것도 해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다납부세액의 20%라는 연간 상한에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는, 경정청구일(2016. 6. 7.) 당시의 법령에 따르면 특례규정의 적용은 경정청구 전에 자본시장법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식회계 제재를 “받은 경우로서…경정을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경정청구는 증권선

물위원회의 제재가 나오기 전에 신청한 것이니 특례규정의 포섭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정결정 이전에 제재조치가 나온 이상 분식회계 특례의 적용범위에 들어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법이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요건으로 정한 것[4]은 감액경정의 원인이 된 회계처리가 실제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시까지 제재조치가 이루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특례규정에 관한 또 한 가지 쟁점은 2017. 1. 1.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연간 20% 상한, 곧 후속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다납부세액의 20%를 연간 상한으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가입니다. 개정법률 부칙[5]에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경정'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뜻이 경정청구가 아니라 경정결정이라는 것이야 당연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소급입법의 금지나 신뢰보호를 내세웠지만 환급청구권은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이 아니고 납세의무자의 이익과 공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면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공익보다 더 보호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감액경정을 구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직원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을 부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6] 직원들이 분식회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이 없더라도,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애초에 성과상여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은 직원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대법원은 매출채권의 변제시기를 유예해 주면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상 이자지급일에 이자수익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는 때에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채무자의 경영악화나 현실적인 회수곤란은 이후 회수불능이 확정되었을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7]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이나 합리적인 보수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퇴직 임원 등의 고문료 역시 손금산입을 부정하였습니다.[8] 반면 해외 선박 수주 과정에서 지급한 자문료는 사업관련성·통상성·수익관련성을 인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였고, 자회사 설계용역비는 과세관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사외협력사 거래단가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내협력사에 지급한 생산장려금 등은 제공받은 용역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며, 직원의 횡령과 관련해서도 회사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로 둘이라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고가 남대문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한 후 본점을 거제시로 이전함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통영세무서로 바뀌어서 경정거부처분은 통영세무서장이 했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 이후 2개월이라는 결정시한 안에 남대문세무서장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해서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생긴 뒤 통영세무서장은 명시적으로 거부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간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대법원은 명시적 거부처분이 있었던 이상 그를 다투어야 맞다는 이유로 남대문세무서장의 간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하였습니다. 이를 별도로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고 남대문세무서장에는 피고적격도 없다는 것입니다.[9]

3. 시사점

법령의 글귀보다 목적론적 해석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글귀로만 따지면 분식회계에 터잡은 경정청구란, 분식회계였다는 사실이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에 따른 제재로 드러났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원고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감액경정결정 이전에 분식회계 제재가 나온 이상 특례규정에 걸린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 성과상여금에 관한 판단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식회계에 기초하여 지급된 임원 성과급에 관하여, 수령자가 분식회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성과급의 손금산입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Tax Intelligence 9월호 Case Update 판례 [1]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이번 판결은 위 선행 판결을 직접 인용하면서 동일한 법리를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에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의 손금산입 여부는 수령자인 임직원에게 분식회계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보다는,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 원인이 된 경영성과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실제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한결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전략 면에서 본다면, 분식회계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손금산입하겠다는 주장은 아마 소탐대실로 앞 특례규정에 관한 판단에도 불리한 선입견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비용의 손금성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비용의 명칭이나 거래당사자의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 사업상 필요성, 대가관계 및 적정한 비교대상의 존재 등을 토대로 판단된다는 점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자문료, 특수관계법인 용역비, 퇴직 임원 등에 대한 고문료와 같이 과세상 다툼이 발생하기 쉬운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내역, 보수 산정근거 및 사업상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갖추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2두33811 판결.
[2] 현행법으로 법인세법 제58조의3.
[3]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4] 개정 후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
[5]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 부칙 제5조.
[6]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7]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797 판결 등.
[8]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9]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및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참조.

관련구성원

백제흠
대표변호사

02-316-4052
jhebaik@shinkim.com

도훈태
변호사

02-316-4090
htdoh@shinkim.com

윤진규
변호사

02-316-1614
jkyoon@shinkim.com

윤준석
변호사

02-316-7212
jseyoon@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